

医療保險코너



**문** 진료수가기준 제6장 마취료산정지침(5)항 마스크 및 기관내 삽입에 의한 폐세순 환식 전신마취의 경우에는 산소호흡, 응급적인 공호흡 및 EKG monitoring료는 산정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 그러나 마취전 검사에서 심장이 나쁘거나 노인 또는 수술도중에 갑자기 혈압이 떨어지거나 맥박에 이상이 있을 경우는 물론 대수술(Neuro Surgery Sitting Position)에는 반드시 EKG monitor를 해야하는데 이 경우 보험급여 산정이 가능한가요?

**답** EKG monitoring료는 의료보험 진료수가 기준액표에 별도로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된 경우에는 산정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마취, 수술 등 안전한 진료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정수가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별도로 산정할 수 없습니다.

**문** 자가운전자가 종합보험에만 가입하고 운전자보험과 자손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이 가족과 여행 중에 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운전자 및 가족이 해를 입었을 경우, 보험급여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.

**답** 의료보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른 법령에 의하여 요양을 받거나 요양비를 지급받지 않더라도 동법 동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자가운전자의 과실이 자신의 범죄행위에 기인하였는지,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켰는지의 여부를 보험자가 조사 확인하여 급여 제한 대상이 되면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

에 의거 적의 조치합니다.

**문** 암환자 또는 면역결핍증환자에게 실시하는 단구매개암세포파괴능검사(MTKA), 항체의존성세포파괴능검사, 백혈구탐식능검사, 분변내 Chymotripsin정량검사, B 임파구 정량검사의 수가산정방법을 알고 싶습니다.

**답** 단구매개암세포파괴능검사(MTKA), 항체의존성세포파괴능검사, 백혈구탐식능검사는 일부 대학부속병원에서도 아직 연구단계에 있는 검사로 보편적인 검사로 볼 수 없으므로 「진료수가기준-진료수가산정방법10」 및 「요양급여기준-진료기준 1-마」에 의거 보험급여를 할 수 없으며 본인에게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.

분변내 Chymotripsin정량검사는 혈중약물정량검사(나-335)료에 준용 산정하기 바람이며 임파구 정량검사는 형광염색 재료인 Monoclonal Antibody을 이용하여 실시하므로 T-세포셋 세트 단세포균항체법검사(나-477)료에 의하여 산정하기 바랍니다.

**문** 진료수가기준액표 중 제4장 투약 및 처방료 중 제2절의 2종의료보험시범지역의 조제료(라-4) 산정방법 중 조제료는 「제수, 투약량, 처방전 매수 및 진료과목수를 불문한다」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 이 경우 한 환자가 2개의 각기 다른 상병으로 2개 요양취급기관의 진료를 받은 후 같은 약국에서 다른 약제 처방전에 의거 2회 조제하였을 때와 일

부 중복 약제처방전에 의거 조제 하였을 때 조제로 산정방법과 또다른 한 환자가 동일상병으로 각기 다른 요양취급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후에 위와 같이 조제시 조제로 산정방법을 알고 싶습니다.

**답** 같은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같은 날 2회 이상의 처방전을 발행하여 같은 약국에서 조제투약을 받을 경우 그 약국의 조제료는 1일당 1회만 산정합니다. 한 환자가 둘이상의 의료기관으로 부터 같은 날에 각각 처방전을 발급받아 한 약국에서 조제투약을 받을 경우에는 약국의 조제료는 처방전발행 의료기관 별로 각각 산정할 수 있습니다.

이 경우에는 기본조제기술료는 환자 1인당 30일 이내에 1회만 산정하게 되므로 의료기관 별로 각각 산정하여서는 아니됩니다.

**문** 진료수가기준(보사부 고시 제85-11호'85. 3. 1 시행)-제2장 검사료 중 항산균집균도말검사(나-400)를 항산균집균도말검사배양 및 동정검사, 약제감수성검사와 같이 실시하는 경우 직접도말검사(나-400)료를 따로 인정할 수 있는지요?

**답** 항산균검경은 항산균집균도말, 배양 및 동정, 약제감수성검사와 과정에 포함되므로 항산균검경(나-400)을 항산균집균도말검사(나-400주2), 항산균배양 및 동정검사(나-405주), 항산균약제감수성검사(나-406주)와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는 항산균검경(나-400)을 별도 산정할 수 없습니다.

**문** Urotron을 사용하여 WBC, Nitrite, ph, Protein, Glucose, Ketone, Urobilinogen, Bilirubin, RBC,에 대한 소변검사 실시 수가산정방법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.

**답** 의료보험수가 기준액표 제2장 중 일반검사(나-1, 나-3)는 현재까지 널리 사용되고 있는 시험지검사법에 의한 분류이나 기구 및 기기의 중별 또는 시험방법에 따라 일일이 재분류하기 곤란하므로 검사자동분석기인

Urotron(상품명)을 사용하여 일반검사를 실시하더라도 「나-1」 또는 「나-3」에 의한 검사료를 산정하여야 합니다. 따라서 요일반검사 g종목(나-3)중 Occult Blood, Specific Gravity 대신 RBC와 WBC를 대체하여 자동분석기로 검사하더라도 「나-3」의 소정금액만을 산정하기 바랍니다.

**문** 감마카메라 촬영시 Manmo-MI-NC 필름을 사용하는데 이 경우 인정여부와 기종에 관계없이 일반 방사선 필름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.

**답** 방사선 동위원소에 의한 검사시 Manmo MI-NC 필름을 사용한 경우에는 재료대 협약가('84. 12. 1 시행)에 의하여 그 사용량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.

이 경우에는 요양취급기관이 같은 기기를 보유하고 있음을 진료비심사기관에 요양취급기관 현황신고서에 의한 주요 의료장비의 신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.

**문** 급여 31510-4469('85. 4. 19)호로 혈액 및 혈액성분제제의 의료기관 수혈수수료는 혈액형검사(나201, 나202), 교차시험(나205), 수액 또는 혈액대용제주사료(마5-가)의 소정금액을 산정토록 회신됐으나 같은 수수료 산정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 하오니 알려 주십시오.

① 회시된 수혈수수료가 혈액 및 혈액성분제제의 1Pint 당 적용되는 수수료 입니까? (1pint 당 인정된다면 진료수가 기준액표 제2장 검사료, 나205항의 「주」와 상반됨)

② 위항 관련, 혈액을 10pint 준비하였으나 사정에 의거 6pint만 수혈시 남은 4pint에 대한 수수료산정방법 및 인정범위는 어떠합니까?

③ 의료보호 환자에게서는 수혈수수료와 혈액값을 별도 분리 수혈수수료는 II란에 기재하여 의료보험 수가의 83%를 적용받도록되어 있는데 전혈값 1만3백원을 I란에 수혈수수료(나201, 나202호, 나205, 마5-가)는 II란에

기재하는지('85. 4. 17이전에는 전혈료 1만 5백원중 혈액값 8천3백50원은 I란에, 수기로 1천7백원은 II란에 기재하여 왔음), 또 위의 ①②항의 적용을 받는지 알고 싶습니다.

**답** 혈액 및 혈액성분제제수가와 헌혈환부 적립금에 대한 고시가 '85. 4. 17개정 고시됨에 따라 의료보험진료수가기준액표 제2장 나-205의 주)의 규정에 불구하고 '85. 4. 17부터는 다음과 같이 산정하기 바랍니다.

혈액형 검사는 1인당 1회만 실시하여도 알 수 있는 것이므로 수혈하고자 실시한 때에는 수혈자에 대한 혈액형검사료(나-201 및 나-202)는 1회만 산정하여야 합니다. 수혈시 교차시험은 매 pint당 실시하게 되므로 수혈한 경우는 pint당 「나-205」의 소정금액을 산정하나 수혈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과정에서 실시한 교차시험일지라도 실제 수혈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정할 수 없습니다. 또 수혈수기료는 혈액 1 pint의 용량이 320ml이므로 「마-5-가」의 소정금액을 수혈한 매 pint당 1회씩 산정할 수 있습니다. 혈액 및 혈액성분제제의 수가는 의료보험진료수가기준액표 제13장 산정지침-(2)와 「혈액 및 혈액성분 제제수가와 헌혈환부 적립금」 고시(보사부 고시 제85-39호, '85. 4. 17)-2항에 의거 요양취급기관의 종별에 따른가산료를 산정할 수 없도록 하였으므로 의료보험수가 산정은 '85. 4. 17부터 혈액가와 검사 및 수기료가 분리되어 있더라도 수혈수수료를 포함하여 혈액대를 진료비명세서 I란에 기재

하여야 합니다. 그러나 의료보호수가 산정방법은 종전과 같이 혈액대는 진료비명세서 I란에, 수혈수수료는 II란에 기재하여 청구하기 바랍니다.

**문** I.C.P Sensor는 종전부터 사용해온 카테타에 해당되므로 그 재료대는 별도 산정할 수 있으나 새로 개발된 Intra Ventricular Monitoring Catheter Set는 우리나라 현 보험급여 수준을 감안할 때 보험급여로 인정할 수 없음을 급여1492-33526호('84. 12. 19)로 회신했는데 새로 개발된 Monitoring Sensor Set는 보험급여가 가능 한가요?

**답** Monitoring Sensor Set는 I.C.P Sensor에 Monitoring장치를 부착하여 보다 안전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제작된 재료입니다. Intra Ventricular Monitoring Catheter Set도 이와 같은 재료에 해당되어 보험급여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입니다. 따라서 Monitoring Sensor Set도 보험급여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.

**문** 흉막수술후 배액, 배농 목적으로 삽입하는 Thoracic Catheter(Chest tube)의 인정은?

**답** 진료수가기준액표 제9장 처치 및 수술료(산정지침)-(10)-⑬ 및 진료수가 산정방법 6에 따라 산정할 수 있습니다. \*

## □ 會務報告

제 9 차 實行理事會 ○일시: 1985. 5. 8(수) 07:30

○장소: 본회 회의실

### 1. 85년도 사업추진 방향

가. 기획관리분야 사업에서 특히 의료보험업무를 보다 중점적으로 추진토록 하고 상수도료 미조정지역 조정은 해당 시도지부와 협조 추진할 것이며 각종 공제회 등 진료비 지급에서 3개월 이상의 연수료를 발행하는